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4. 10. 16. 공포, 2025.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피고인의 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34조의13제1항 및 제3항 신설)
- 예외적으로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정함(안 제134조의13제2항 신설)

4.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13(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이 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조회서를 교부 또는 송부하여 그로부터 해당 의견조회서를 제출받는 방법
2. 서면·전화·전자우편·모사전송·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피해자등의 의견을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의견 확인의 상대방·방법·연월일 및 피해자등이 제출한 의견(피해자등이 의견제출을 거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94조의5 제1항 단서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해자등이 이미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탁에 관하여 의사를 진술하여 다시 그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등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심리나 절차 진행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등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 ③ 법 제294조의5에 따라 피해자등이 제출한 의견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13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34조의13(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들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이 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들’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조회서를 교부 또는 송부하여 그로부터 해당 의견조회서를 제출받는 방법</u> <u>2. 서면·전화·전자우편·모사전송·휴대전화 문자전송 그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방법.</u> <u>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의견 확인의 상대방·방법·연월일 및 피해자들이 제출한 의견(피해자들이 의견제출을 거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u>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94조의5 제1항 단서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해자등이 이미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탁에 관하여 의사를 진술하여 다시 그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등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심리나 절차 진행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등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③ 법 제294조의5에 따라 피해자등이 제출한 의견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930